
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
	보도	2017. 10. 10.(화) 조간	배포

담당부서	불법금융대응단	김범수 팀장(3145-8521), 곽소진 조사역(3145-8530)
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 : 첨단 수법으로 무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유의, 소비자경보 발령
- 악성코드 유포, 전화번호 변작 및 가상화폐 악용을 결합
 [「3유·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」 이행과제]

■ 소비자경보 2017-8호			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스마트폰 이용자		

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최근 악성코드 유포, 전화번호 변작 및 가상화폐 악용 등 첨단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
- 특히,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

※ 금감원 피해(상담) 접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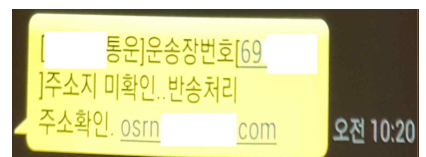
- '17.7월~9.20일 기간 중 악성코드 설치에 따른 금감원 전화(☎1332) 사칭 상담건수 총 18건
- '17.1월~8월 기간 중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,652건 중 48%가 발신번호 변작 등 불법이용
- '17.7월~8월 가상화폐를 악용하여 피해금이 인출된 사례 총 50건(피해금 35억원)

2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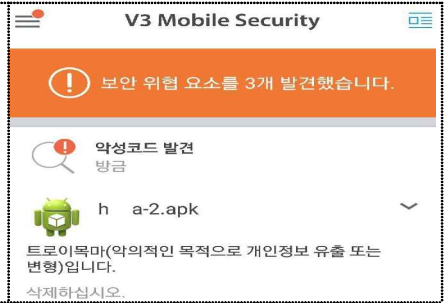
*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사기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나, 사기과정 및 피해금 인출과정에서 첨단 수법을 사용

1 피해자 물색 단계 ⇒ 악성코드 유포

- 사기범은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하며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



- 택배 문자로 오인한 피해자가 URL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



2 보이스피싱 시도 단계 ⇒ 전화번호 변작

- 사기범은 전화번호를 확보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**금감원 콜센터번호(☎1332)** 및 금융회사 대표전화가 표시*되게끔 발신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전화

*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피해자가 '1332' 및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(Return Call)하여도 사기범에게 연결

-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시도



3 피해금 인출 단계 ⇒ 가상화폐 악용

- 사기범은 가상화폐 매매에 필요한 거래소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입금*

* 피해자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하거나, 혹은 피해자가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면 사기범이 거래소 가상계좌로 입금



-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가상화폐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거액의 현금을 손쉽게 인출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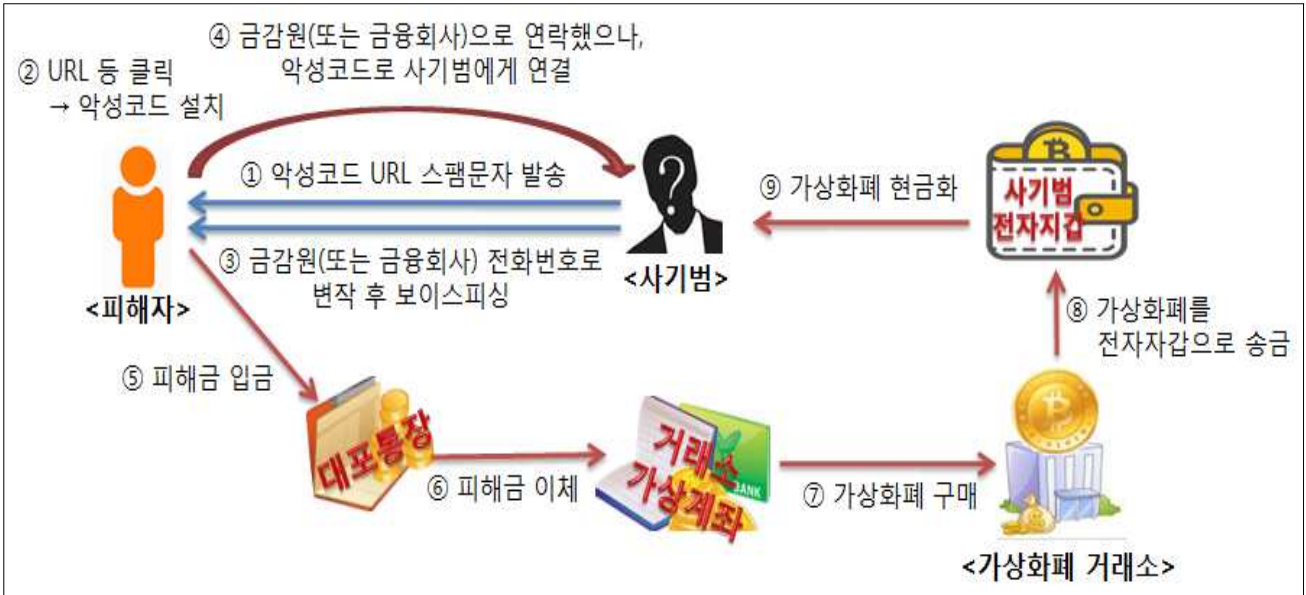
*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, 인출한도에 제한이 없음(금융회사 자동화기기 일일 인출한도는 600만원)



3 피해 사례

- (사건개요) 사기범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금감원(☎1332) 및 저축은행 전화번호가 표시되게끔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편취
 - (17.9.19.) 사기범은 악성코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 후 URL을 클릭한 본건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
 - (17.9.20.) 사기범은 'H캐피탈'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쓰고 있던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기망
 - (17.9.20.) 피해자는 기존 대출회사인 P저축은행 대표번호(☎1599-07xx)로 전화했으나,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동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연결되었고,
 - 사기범이 안내하는 대출금 상환계좌(사실은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)로 39백만 원을 송금
 - (17.9.20.) 사기범은 대포통장에 입금된 39백만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구매 한 후, 이를 본인의 전자 지갑으로 보내 현금화
 - (17.9.21.) 다음날,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감원 콜센터번호(☎1332)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표시되게끔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
 - 사기범은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계좌라며 무죄 소명을 위해서는 금감원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기망
 - * 피해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걸려온 금감원 전화번호(☎1332)로 전화(Return Call)하였으나 사기범에게 연결
 - (17.9.22.)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는 근처에 있는 금감원 지원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2차 피해를 예방

악성코드 유포, 전화번호 변작 및 가상화폐를 악용한 첨단 보이스피싱 수법



4 금융소비자 당부사항

- 1 (악성코드 감염 유의)**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앱 또는 문자메시지는 악성코드일 수 있으므로 보는 즉시 바로 삭제

 - 특히, 택배 배송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,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앱을 이용할 것을 권장
- 2 (변작된 전화번호 유의)** 발신 전화번호는 변작되어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전화번호로 허위 표시 될 수 있으므로

 -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할 것
- 3 (가상화폐 거래 유의)** 금감원 및 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금전을 송금·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,

 - 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

5 향후 대응방안

- 1 각 금융회사 및 악성 전화 차단 서비스 회사(T전화, 후후, 후스콜 등)로 하여금 본 사례를 고객들에게 전파하여
 - 보안 앱 설치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도록 안내
- 2 발신번호 변작을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
 -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히 변작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용중지
- 3 각 금융회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의 입금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,
 - 가상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등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수준에 준하는 대응조치를 강구하도록 협조 요청